



등 록 번 호 : 20141061
최초 등록일 : 2014-10-31
최종 등록일 : 2025-05-15

www.dr-soo.com
drsoo0152@naver.com

닥터수

정 보 공 개 서

(주)닥터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닥터수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22-56, 3층31,317,318,319,320호

[대표 전화번호] 02-2248-0700 [대표 팩스번호] 02-6442-1065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부 / 02-2248-070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닥터수	닥터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22-56, 3층31,317,318,319,320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13. 05. 28	2013. 06. 10	문혜옥	02-2248-0700	02-6442-1065
	법인등록번호	110111-5145978	사업자등록번호	204-86-42722	

2.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문혜옥	닥터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22-56, 3층31,317,318,319,320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문혜옥	02-2248-0700	02-6442-106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송재준	닥터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22-56, 3층31,317,318,319,320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문혜옥	02-2248-0700	02-6442-1065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	-	-	-	-

4. 가맹 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모공관리전문 닥터수	피부, 비만, 바디, 두피, 모공 관리 전문 에스테틱
상 호	닥터수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 또는 동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3638260000(2016.04.25.)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401325072(2018.01.25.)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연도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2022	246,118	375,822	-129,704	433,285	15,800	18,592
2023	235,758	358,530	-122,772	374,086	8,437	6,932
2024	220,801	397,556	-176,755	193,130	-53,488	-53,983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상기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임원	문혜옥	대표	2009.01.21~2016.05.28	닥터수 이사	교육 총괄
			2016.05.29~현재	(주)닥터수 대표	경영 총괄
관련 임원	송재준	이사	2019.06.26~현재	이사	행정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0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주)닥터수 외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등록 2016.06.27	출원 4120150040818 등록 4103638260000	문혜옥	2026.06.27
	상표	등록 2018.01.25	출원 4020160112937 등록 4013250720000	문혜옥	2028.01.25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상표권리자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았습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4년 10월~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닥터수	닥터수	국영서	2014.10.16~2016.03.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47-10 2층
(주)닥터수	닥터수	국영서	2016.03.30~2016.05.28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로5,3층(휘문동)
(주)닥터수	닥터수	문혜옥	2016.05.29~2020.04.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47-10 2층
(주)닥터수	닥터수	문혜옥	2020.04.30~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22-56, 3층31,317,318,319,320호

3. [닥터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닥터수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이미용	피부관리 전문점

4. 최근 3년 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8	18	0	17	17	0	10	10	0
서울	2	2	0	2	2	0	1	1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1	1	0	1	1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1	1	0	1	1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13	13	0	12	12	0	6	6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1	1	0	1	1	0	1	1	0
전북	1	1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1	1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17	4	0	3	2	18
2023	18	4	0	5	0	17
2024	17	0	0	7	0	10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닥터수] 외에는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 관계인도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4년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10	120,920	4,273	439,589	6,992	16,018	641	
서울	1							* 5곳 미만
부산	0							
대구	0							
인천	0							
광주	1							* 5곳 미만
대전	0							
울산	1							* 5곳 미만
세종	0							
경기	6	86,327	3,753	153,637	6,992	16,018	641	
강원	0							
충북	0							
충남	1							* 5곳 미만
전북	0							
전남	0							
경북	0							
경남	0							
제주	0							

※ 가맹점 매출액은 POS상 매출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영업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을 산정하였으며 영업 개월 수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가맹점은 12개월 매출로 환산하여 기재 하였습니다.

※ 가맹점의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닥터수]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0개	1,69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현재 당사가 [닥터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운영 중인 지사 또는 지역총판은 없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에서 전사업년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비공개)	385	 (비공개)	-	
판촉	-	-	-	-	-	
합계	-	-	385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중소기업은행	남양주지점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2, 1층	031-553-2082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중소기업은행계좌가	매장 직접 방문 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개인상품부)방문 → ③ 가맹금 예치 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 예치 증서 교부 받아 보관

있는 사업자	인터넷 뱅킹 이용 시	① 중소기업은행기업인터넷뱅킹접속 → ② 소호센터 → ③ 가맹금 예치 서비스 클릭 → ④ 가맹점사업자 바로가기 클릭 → ⑤ 가맹금 이체→ ⑥ 가맹금 예치 완료
중소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중소기업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 시	① 가맹금 예치 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 시	① 가맹금 예치 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귀하는 또한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프랜차이즈 보증 보험 증권)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피해보상보험 증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직접 가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Ⅲ**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O]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	-	-	-	-	

※ 해당 사항 없음

2. 당사와 임원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외비용 : 점포임대관련 비용]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가맹비	5,5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	영업표지 사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금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
교육비	5,5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가맹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총계	11,00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 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3,0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개월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자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액
가맹비	5,500
교육비	5,500
보증금	3,000
합계	14,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type A (15 평형)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49.5 m ² 기준	면적 3.3m ² 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 불가 사유	비고
총계	-	44,450	2,964	-	점주 자율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자율선택	24,750	1,650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3.3 m ² 당 165 만원
홍보비	가맹본부	2,200	147		-
미용 기기		12,000	800		-
초도물품		5,500	367		-
고객관리 Pro.	협력업체	임대	-		업체 기준에 따름
단말기	자율선택	임대	-		업체 기준에 따름
별도금액	자율선택	철거, 간판,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등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

※ type B (25 평형)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82.5 m ² 기준	면적 3.3m ² 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불가 사유	비고
총계	-	66,450	2,658	-	점주 자율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자율선택	41,250	1,650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3.3 m ² 당 165 만원
홍보비	가맹본부	2,200	88		-
미용 기기		12,000	480		-
초도물품		11,000	440		-
고객관리 Pro.	협력업체	임대	-		업체 기준에 따름
단말기	자율선택	임대	-		업체 기준에 따름
별도금액	자율선택	철거, 간판,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등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

-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하여야 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해야 합니다.

③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관리감독의 대가(감리비)로 **3.3㎡ 기준으로 330천원(부가세 포함)**을 인테리어 공사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점 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 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 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4)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당사는 귀하에게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의사 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당사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	피부관리사 국가 자격증 보유 점포의 임차 또는 보유가 가능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
종업원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	만 20세 이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용모단정한 자 일 것 피부관리사 국가 자격증 보유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포스	협력업체	월 33,000원	말일 지급	시스템 관리비로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월 55만원	매월 28일 당사에 지 급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2%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당사의 광고 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 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 관리	당 가맹사업의 기준에 따른 점포운영 상태 점검	필요시	문의 : 가맹사업팀
재고 관리	실재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 상 재고와 비교		
회계 처리	가맹점의 매출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 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계약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7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① 본 계약 종료 후 “을”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반환된다. 1. ‘닥터수’의 핵심 Know-how 사용금지 2. 상표, 상호 기타 일체의 영업표시의 사용 금지 3.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한 일체의 영업표시를 종료 후 7일 이내에 폐기(철거)하여야 함 4. “갑”의 임대물이 있을 경우 그 반환이 완료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그 보상이 완료되어야 함 5. ‘닥터수’의 상호 및 기타 유사한 안내문 등(예, 전화 연결음)의 삭제 6. 당 가맹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 7. 모공스파의 시술 동작 및 관련 관리 행위, 홍보 전면 금지 ② 제1항에 규정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은 본 계약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41조

"갑"이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 ③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을"은 '닥터수' 가맹점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갑"이 제공한 모든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를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는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규정된 철거 및 원상복구, 반환 기한은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로 하며,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단, 정해진 기한 내에 철거 및 원상복구, 반환이 지체되거나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면적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 면적) 100,000원씩[지체일수X100,00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필수품목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닥터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닥터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이익 내용	금액(단위:천 원)	비고
-	-	-	-	-	-

※ 해당 사항 없음

- 2) 당사가 [닥터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첨[판매 상품 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및 미시정 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다른 가맹점 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별첨[공급 상품 리스트] 참조	거래 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및 미시정 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 아래 관리 프로그램 리스트 참조	홈페이지 및 가맹점 소통 채널(네이버 밴드) 공지	홈페이지 및 가맹점 소통 채널(네이버 밴드) 공지	

※ 관리 프로그램 메뉴

필수 관리 프로그램 메뉴	선택 메뉴	
	권장 관리 프로그램	선택 운용 관리 프로그램
모공스파 BASIC	탄산 두피 테라피	유탕 면봉 테라피
모공스파 SPECIAL	VIP 수오로라 테라피	각테일 필링
모공 데독스 테라피	여드름 케어	스윗 초코 테라피
수소스파 BASIC	아로마 로즈 테라피	골드링 테라피
수소스파 SPECIAL	웨딩 프로그램	산전산후 케어
	렉서리 골드 테라피	

※ 상기 관리 프로그램 리스트는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승인하에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을 일반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피부, 비만, 바디, 두피, 모공 관리 전문 에스테틱, 피부관리업	닥터수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직경 500미터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계약서 별지에 구역(지도)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동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 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 사업자가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 사업자가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닥터수 영업 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닥터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닥터수	https://smartstore.naver.com/drsoo	앰플, 세럼, 에센스 스킨토너, 미스트 크림, 로션 BB, 섰크림	일부 소매 상품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6.3%	0%	0%	3.7%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92.7%	7.3%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 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관련 계약조문 8조 1항
1.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을"이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갑"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을"이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을"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두렵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계약서 제33조 및 40조 1항 참고	
1.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 "을"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갑"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4. "을"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을"의 채무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6.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7. "을"이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8. "을"이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9. "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사업권을 양도했을 경우	
11. "을"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12. "을"이 가맹점운영의 부실로 매출이 부실하고 "갑"의 브랜드 인지도 실추가 우려되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갑"이 판단 할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대한 기준은 1차 위반 사실을 시정 요구한 시점으로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40조 2항 [즉시계약 해지 사유]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서 내용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임의적으로 가맹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 다만, 상속인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닥터수]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피부 관리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가맹사업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1:00 (11시간)	월 20일(2월은 15일) 이상 영업일 준수	문의 : 가맹사업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사업장에 따라 상이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점포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점포운영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각 지역 가맹사업팀	관리표 (운영매뉴얼 참조)
회계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자료 요청 → 회계자료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각 지역 가맹사업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 닥터수 운영매뉴얼

※ 내용 변경 시 실시 7일 전 사전 고지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채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통일적인 홍보물 등의 디자인, 시안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월별 판촉 행사

		등의 제작비용 등은 당사가 부담함	직접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팸플렛, 전단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	--	--------------------	---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상기 분담절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9조 (광고 및 판촉)	
⑥	“을”은 “갑”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점포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독자적인 개별 판촉 활동 및 광고활동”을 할 수 있으며, 비용은 “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을”은 “독자적인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팸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그 형식이나 소재, 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내용 중에 “갑”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 기타 대외홍보 항목(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카피문구 등)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23조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영업상 비밀이나 노하우를 본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종료 후 3년까지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하는 표준 운영 매뉴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를 “갑”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대여, 판매, 양도,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가맹계약서 제42조)

1.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사항 미이행 및 채무불이행으로 손해 발생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한다.(가맹본부도 본 규정에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2.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중 일방의 귀책사유 혹은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지일	위약금
계약체결 후 가맹점 오픈 전	예치금액의 50%
가맹점 오픈 후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잔여 개월 수 X (100)만원

3. 가맹점 오픈 전 해지 시 위약금과 별개로 인테리어, 기기, 시설, 제품, 교육 등 실제 비용이 발생한 부분을 제하고 반환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위해서 지원한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가맹점사업자의 오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위약금과 별도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비밀유지의무 및 계약기간 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금으로 금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필수품목을 무단으로 자점매입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일천만원을 지급하여야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점포 개발 및 상권 분석기간 제외)	IV.가맹점사업자 의 부담 참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홈페이지 문의 - 내방 혹은 방문	14일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입지선정 - 입지 인근 상권 분석	요청 시 실시	
점포 실측 및 도면미팅	- 예상 투자(개설)비 산출 - 도면 협의	7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개점 일정 확인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30일	
교육 실시	- 기술 및 서비스 교육 - 마케팅, 매장 운영 교육	14일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시행)	
초도제품 등 입고	- 초도제품, 기기 및 기자재 입고 - 비품, 소모품 등 개점에 필요한 물품 입고	5일	
오픈 준비	- 오픈 전 최종 리허설 - 매장 청소 - 제품 디스플레이 등 정리	2일	
오픈	- 영업 개시 - 판촉 및 홍보 이벤트 - 온라인 마케팅 - 가맹금, 계약이행보증증권 수령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52조 (분쟁해결 절차)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임직원을 포함한다)과 “을” 양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법” 소정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나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 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02-2248-0700)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 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요청 시 별도 협약)	문의: 가맹사업팀 (02-2248-0700)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소개, 점포운영,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실습교육 이론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까지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상품, 서비스 강화, 마케팅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수시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25시간	5,5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4시간	-	수시 진행

※ 수시교육은 별도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 시 실비 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사전 통지 하며, 교통비, 숙식비는 개별 부담임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 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8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가맹점 개점일 전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제16조 [개점 전 교육·훈련]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제40조 (계약당사자의 일반 해지권) 제33조 (상품공급 및 영업지원의 중단)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
(02-2248-07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오픈 홍보 물품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본부 닥터수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가맹점 목록은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중에서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와 가장 인접한 가맹점의 목록입니다.

가맹점의 목록은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맹점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순서대로 10개를,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 이기 때문에 가맹점수는 ()개를 기재하였습니다.

No.	지역	지점명	주 소
1			
2			
3			
4			
5			
6			
7			
8			
9			
10			

[별첨] 예치신청서

[서식]

(앞 쪽)

가맹금 예치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별첨] 수령확인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 III.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I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 . 훈련프로그램

비밀유지확약

상기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본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따른 자문을 받는 등 당 가맹사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 복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 지 않을 경우 귀사에게 본 정보공개서를 신속히 반환한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비밀유지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일자 : 20 년 월 일

가맹 본부 : (주)닥 터 수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 령 자 :

(인) 또는 서명

[별첨] 수령확인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 III.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I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 . 훈련프로그램

비밀유지확약

상기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본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따른 자문을 받는 등 당 가맹사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 복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 지 않을 경우 귀사에게 본 정보공개서를 신속히 반환한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비밀유지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일자 : 20 년 월 일

가맹 본부 : (주)닥 터 수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 령 자 :

(인) 또는 서명

[별첨]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확인증
(가맹희망자 보관용)

본인은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자필로 작성하여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사실을 확인합니다.

20

수령자 (인)

항목	자필 기재		자필확인 (서명/인감)
브랜드명			
가맹본부명			
제공 일시			
제공받은 장소			
문서에 기재된 인근가맹점 수			
수령자 관련	주소		
	전화번호		
제공 받은 사실 확인	(기재 예 : 이상과 같이 인근가맹점현황문서 1부를 제공받았습니다)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제공자 확인란>

가맹본부 _____는 가맹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이상과 같이
가맹희망자 _____에게 20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 (인)

[별첨]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확인증
(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자필로 작성하여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수령자 (인)

항목	자필 기재		자필확인 (서명/인감)
브랜드명			
가맹본부명			
제공 일시			
제공받은 장소			
문서에 기재된 인근가맹점 수			
수령자 관련	주소		
	전화번호		
제공 받은 사실 확인	(기재 예 : 이상과 같이 인근가맹점현황문서 1부를 제공받았습니다)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제공자 확인란>

가맹본부 _____는 가맹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이상과 같이
가맹희망자 _____에게 20 . .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 (인)

가맹본부 재무증명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